

“Guardian, Elton Jone과의 풍자적 표현 관련 소송에서 승리”

「Guardian」은 Elton Jone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명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 기자가 풍자적 표현을 쓸 권리를 인정 받았다. 언론에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The Sun」을 상대로 사상 최고의 명예훼손 보상액을 받아낸 적이 있는 팝스타를 상대로 언론이 승리한 것은 의외의 일이다.

Elton Jone은 Marina Hyde가 자신의 일기에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룬 「Guardian」의 6월 5일자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기사는 Elton Jone의 ‘비상식적으로 사치스러운’ 연례 자선 행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비용을 즐기면, 남는 것은 재단으로 간다. 나는 이것을 ‘자선 경제 (care-o-nomics)’라고 부른다”고 보도했다.

Elton Jone은 White Tie and Tiara Ball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자선기금으로 3천8백만 파운드 이상을 모았지만, 「Guardian」의 기사는 마치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조성 기금의 일부만이 재단으로 돌아가는 행사를 주최하고, 그의 재단과 재단이 지지하는 좋은 일들을 위해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유명 인사를 만나거나 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Hyde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기사를 써 가중된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에서 Tugendhat 판사는 이 사건 판단은 맥락을 살펴야하며, 해당 기사가 신문의 뉴스란이 아닌 주말 섹션에 보도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기사가 ‘Elton Jone의 일기 엿보기’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상식적인 독자라면 그것이 Elton Jone이 직접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lton Jone은 그 기사가 웃자고 쓴 것임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비열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ugendhat 판사는 그 기사에 대해 ‘상식적인 독자라면 「Guardian」의 주말 섹션을 Elton Jone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는 ‘그 기사가 뉴스란에, 유머 없이 실렸다면 상식적인 독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8년 12월 15일자)

“원정 소송을 이유로 기각 판결 함부로 할 수 없어”

Beatles의 John Lennon에 의해 ‘Magic Alex’라고 불렸던 사람이 「New York Times」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Eady 판사는 해당 사건이 ‘원정 소송’ 중의 하나라며 공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판결은 잘못됐으며, 기사가 영국에서 발행되었나 하는 논란이 있지만, 원고인 John Alexis Mardas는 이곳(영국)에서 명성이 있는 만큼, 법정에서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Beatles’ Apple Electronics사의 전 대표인 Mardas는 두 언론사의 2008년 2월 7일자 지면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Beatles가 1967년과 1968년 긴밀한 인연을 맺었던 인도의 종교 지도자 Maharishi Mahesh Yogi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Mardas는 기사가 자신을 사기꾼이며 Beatles를 위한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탁월한 발명가라고 비교고, Maharishi가 그를 방문한 한 여성을 그의 거처로 피어냈다는 루머를 퍼뜨려 Maharishi와 Beatles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자신의 명성에 미미한 손상을 입을 뿐,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Eady 판사는 Master Leslie 고등법원 판사가 큰 규모의 재판에 얽혀 치를 비용과 수고를 걱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는 없으며, 또한 명예훼손적인 주장이 오래전의 사건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

라고 말했다. 판사는 또 기자는 명백히 그 주장이 독자들 사이에 화제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ady 판사는 현명한 조정을 통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재판을 막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은 소송 당사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해당 상황을 원정 소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ady 판사는 머지않아 인터넷 보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원은 관련법을 그 원칙에 따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ady 판사는 Mardas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과 법적으로 상당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의 논리를 세울 수 있다면, 그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원정 소송'을 비난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원이 왜 사법 심사를 거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Mardas가 현재 (EU에 속해 있는) 그리스 주민이긴 하지만 1963년부터 1996년까지 여기서 살았을 뿐 아니라 영국 국적을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두 아들이 있고, 사법권이 미치는 이곳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며, 그가 과거에 다른 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그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피고의 변호인 측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해당 신문이 많이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영국법은 원고가 이 지역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실 증명과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이 사법권 관할 내의 것이라면 적절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정된 판례라고 말했다. 단, 그는 미국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서 이곳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Press Gazette 2008년 12월 23일자)

“BBC1 과 Radio Times, 사기 행위 보도 관련 명예훼손 배상금 지불”

Manchester의 한 치기공사(Dental Technician)가 자신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BBC」의 공식적인 사과와 5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BBC」는 그가 자동차 금융사기로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치과 임플란트 회사에서 근무하는 Mohammed Amar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들어 「BBC」의 프로그램 “Cars, Cops and Criminals” 2008년 7월 9일 방송분과, 15일 재방송분, 그리고 「Radio Times」 5월 11일 판을 고소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BBC」는 사과와 함께, 그에게 5만 파운드의 배상금과 이 사건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

David Eady 판사 주재의 고등법원 심리에서 Amar의 변호인 Victoria Shore는 해당 프로그램이 의뢰인을 급습해 체포하는 것을 방영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론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Amar의 이름과 얼굴이 노출되면서 신원이 알려졌으며, 프로그램은 Amar가 자동차 금융 사기와 관련 기소됐고, 자동차 사기와 연루되어 유죄라고 보도했으며, 「Radio Times」는 프로그램 편성표에서 사진을 게재하여 Amar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그의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에게 그 사진은 Amar가 도둑이며, 자동차 금융사기에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mar는 사실 기소된 적이 없고, 체포된 당일 날 풀려났으며, 그가 자동차 금융 사기와 관련된 도둑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BC」의 변호인인 Jacob Dean는 「BBC」는 Amar의 집까지 들어가 보도한 것을 포함, 해당 프로그램과 「Radio Times」의 보도가 끼친 손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9년 1월 13일자)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혁 시급”

「Guardian」의 Alan Rusbridger 편집장은 탐사 저널리즘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명예훼손법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New York Review of Books」의 기고문에서, 그는 ‘명예훼손 소송 왕국’인 영국의 ‘의심스러운 평판’과 소송비용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언론사들이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담긴 기사들을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Guardian」이 9월 Tesco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Tesco는 「Guardian」이 대형 슈퍼 체인의 조세회피 계획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Rusbridger는 Tesco 사건과 관련, 기업 저널리즘이 악명 높게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 한다며 기업의 회계, 연례보고서, 소송 등에 나타난 정보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기자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Tesco의 세금 경영에 관한 맨 처음의 보도가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슈퍼마켓 체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경험이 많고 회계에 능숙한 기자라도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Tesco의 소송 제기 이후, 어떤 신문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확장을 도모하는지에 대해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usbridger는 Guardian News and Media 그룹이 평가한 것에 기초, Tesco와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양측이 결국 5백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8개월간의 공방전은 9월 신문사가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해결의 정확한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1975년 한 보도에서 기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하자고 제안한 이래로 영국의 명예훼손법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기업들이 공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독자들이 보다 더 많고, 심도있는 보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복잡한 재계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의한 조세회피 방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언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진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어떠한 여론의 압력도 받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고문에서 이러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보도하는 것에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좀더 보도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심각한 금융 위기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언론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Press Gazette 2008년 12월 30일자)

법원, 실명보도에 이례적 보충발언(附言) - “피고인의 불이익에 배려를”

일본 오키나와(沖縄)현의 청소년보호육성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공립중학교의 한 교사가 자신의 체포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NHK」와 오키나와 현의 민간방송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후쿠오카(福岡)고법 나하(那覇)지부는 지난 해 10월 28일자 보도는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 1심 나하지법의 판결과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실명보도를 할 때는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례적인 보충발언(附言)을 했다.

판결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인 교사는 2007년 3월 소녀들에게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1월에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받았다.

재판부는 4개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공공의 중대한 관심사이므로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높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은 보도의 정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익명보도가 아

닌 실명보도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명보도를 할 때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체포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에 그치고 범죄인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체포된 사실을 보도했으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결과를 보도하지 않는 보도기관의 자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의 항소심판결을 보도할 때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보도기관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11월 4일자)

잡지의 표지와 신문광고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週刊現代』의 기사와 광고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캐논과 캐논의 御手洗富士夫 회장이 발행원인 講談社를 상대로 2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2008년 12월 25일 표지와 신문광고의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講談社에 200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10월 20일호 ‘캐논 御手洗 회장과 731부대’라는 제목의 표지와 신문광고이다. 판결에 의하면 잡지는 御手洗 회장의 숙부인 캐논의 초대사장이 전전(戰前)에 유독가스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는데 숙부의 지도교수 수제자가 구 일본군의 731부대의 창설자였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표지와 신문광고에 대해 “서점에서 잡지의 표지를 보면서도 기사를 보지 않는 사람과 신문에서 광고를 보더라도 본문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오해가 생기지 않을 범위 내의 생략이나 과장은 부득이하다”면서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 부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것은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어서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 1월 20일자)

영국의 법정취재 규제 완화 징조, 공소국 장관 “영상촬영 원칙지지”

보도기관에 의한 법정에서의 텔레비전·카메라 사용이 오랫동안 금지되어 온 영국에서 ‘규제 완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2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온 데 이어 잉글랜드·웨일즈 지방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영국 내에서는 그 동안 정보화사회의 성숙에 따라 시민이나 미디어뿐 아니라 법조계에서까지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영국 공소국(公訴局)의 스타머 장관은 지난 1월 9일 잉글랜드·웨일즈지방의 법정에서 형사사법체제의 장래를 전망하는 연설을 하면서 텔레비전·카메라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 사법의 투명성과 보도기관 사이의 협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연설 후 보도진에 대해 “재판은 가급적 공개되고 투명해야 한다.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사례에서는 일정한 한도가 있으나 카메라 사용은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잉글랜드·웨일즈지방의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은 1920년대 중반까지는 인정되었으나, 1925년 ‘형사사법법’이 시행되면서 법정 내에서의 인물의 사진 촬영이나 출판물 목적으로 한 초상화 묘사(描寫)가 금지되었다.

(신문협회보 2009년 1월 27일자)

